

배포 2026. 6. 18.(목)

보도시점

(인터넷) 2026. 6. 18.(목) 국회 본회의 통과 시(별도안내)

(지 면) 2026. 6. 18.(목) 국회 본회의 통과 시(별도안내)

## 교육부 소관 법안 「특수교육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특수교육 계획 수립과 이와 연계하여 교육 여건 개선 기대
-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으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는 6월 1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등 3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수교육여건 개선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학생 주거 복지 증진 사업 추진 기반 마련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고전번역원법(시행: 공포한 날)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된 고전문헌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고전문헌을 번역하여 정보화하더라도 재정지원이 종료되면 서비스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해 번역 자료가 사장 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자료를 이관받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재정지원을 통해 번역된 고전문헌들이 사장 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번역된 고전문헌을 “한국고전종합디비(DB)\*”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민이 번역된 고전문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고전번역원이 관리하는 누리집, <https://db.itkc.or.kr>

##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관련 국정과제】 101-4.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사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숙사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학사 등의 운영·관리와 함께, 대학생 주거 종합 플랫폼 등의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학생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담당 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관영 (044-203-6170)
		담당자	사무관	이일경 (044-203-6173)
<한국고전번 역원법>	대학정책관 학술연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채홍준 (044-203-6870)
		담당자	사무관	박일우 (044-203-6880)
<특수교육법>	학생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책임자	과 장	진창원 (044-203-6554)
		담당자	교육연구관	오영석 (044-203-6549)
<한국사학 진흥재단법>	대학지원관 대학시설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문태 (044-203-7172)
		담당자	사무관	김형선 (044-203-7181)



**붙임1**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u>수집·정리·번역함</u>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lt;신설&gt;</p> <p>6. 제1호부터 <u>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u></p> <p>제15조(업무협조 등) ①·② (생략)</p> <p>&lt;신설&gt;</p>	<p>제1조(목적) ----- ----- <u>수집·정리·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u>----- ----- -----.</p> <p>제6조(사업)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u></p> <p>7. ----- <u>제6호</u>---</p> <p>제15조(업무협조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고전문헌 번역사업을 수행한 개인·법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따른 번역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다.</u></p>
부	칙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붙임2**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p> <p>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u>&lt;신 설&gt;</u></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u>제13조제3항에</u>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p>	<p>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u></p> <p>③ -----<u>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u>----- ----- -----.</p>
부 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특수교육 운영계획의 연차보고서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부장관이 연차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붙임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 ① (생 략) <u>&lt;신 설&gt;</u>  ② (생 략)	제6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u>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